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강 제 훈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머리말

- I. 『세종실록』 「오례」의 편찬 논의와 과정
- II. 『세종실록』 수록 儀註와 禮志 구성의 가능성
- III. 『세종실록』 「오례」의 禮志로서의 완결성

맺음말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A00008)
- 투고일: 2012. 8. 22. ● 심사일: 2012. 8. 23. ● 게재확정일: 2012. 9. 11.

요약

『세종실록』에는 다른 실록과는 달리 다양한 부록이 있다. 『세종실록』에 다양한 부록을 넣게 된 이유로 『고려사』를 기전체 편집했던 관원들이 대거 실록 작업에 투입된 점을 지적하였다.

『세종실록』의 편찬을 편년체로 결정하는 기록은 있지만, 부록을 편집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첫 번째 부록인 五禮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록을 편집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이 두 번 나타난다. 이 글은 이 두 번의 언급을 검토하여 『세종실록』 오례를 편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논의는 세종 때 만들어진 의주를 별도의 부록으로 모을 것인지, 아니면 날짜별 편년 기사로 수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는 세종 26년 국왕의 지시로 변효문 등이 편찬한 五禮儀註를 『세종실록』에 편입하는 문제였다. 두 번 모두 부록으로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현재의 『세종실록』에는 첫 번째 부록으로 五禮를 실고 있다. 번복의 과정은 알 수 없다.

가 글에서는 『세종실록』에 수록된 오례와 관련된 의주가 현재 수록된 상태로는 별도의 부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독립된 부록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편집 작업이 필요하다. 현 상태로 가능한 편집 방식은 『고려사』의 예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려사』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그럴 경우 다른 부록과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변효문·정척 등이 상정한 五禮는 의주와 서례로 구성된 작업이었다. 이 결과물은 아직은 미완의 상태였다. 의주와 서례 자체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의주와 서례 사이의 일관된 체제를 갖추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그런데 「실록오례」는 이미 상당 부분 수정된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로 길레 항목을 대체하면서 나머지 四禮를 그대

로 수용한 것이었다.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따라서 「실록오례」의 편집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의주와 서례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한 의례서의 편찬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록오례」는 향후의 실천을 고려하여 작성된 의례서였지만, 『국조오례의』 단계에 가서야 애초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정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행례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실록오례」가 세종 때의 다양한 의식 개정 작업을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일관성과 체계성에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조선 초기 국가예의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점도 사실이다.

주제어 :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 의례서, 국가의례

머리말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유교국가임을 표방하였다. 즉위교서에서 고려와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지만, 유교국가임을 선언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전 왕조와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유교국가의 이념은 예치였고, 예치는 의례의 정비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유교국가임을 선언한 논리적 맥락에서 조선의 정책 담당자들은 국가 차원의 의례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종 5년에 완성된 『國朝五禮儀』는 의례 정비의 집약이었다. 國家禮로서 五禮의 정비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국조오례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집적되었다.¹⁾ 그러나 『국조오례의』로 집약되기까지의 과정

-
- 1) 조선초기 국가예인 五禮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집적되어 있다. 특히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강문식, 2008,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김문식, 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김창현,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김철웅, 2003, 「조선초기 祀典의 체계화 과정」, 『문화사학』
김태영, 1973,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58
김해영, 2010,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김해영, 2003, 『조선초기 제사진례 연구』 집문당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이 욱, 2002,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임민혁, 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
지두환, 1985, 「國朝五禮儀 編纂過程(I)-吉禮 宗廟·社稷祭儀를 중심으로」, 『부산사학』 9
하양허씨문경공과종친회, 2003, 『敬庵許稠研究』,
한형주, 2004, 「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 『역사교육』 89
한형주, 2004,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성」, 『민족문화연구』 41
한형주, 2006,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44

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면 여전히 대답이 필요한 상태이다.

『세종실록』에는 「五禮」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국조오례의』가 정리되기 이전에 세종 대의 예제 검토를 수용한 결과물로서 통상 이해되고 있다.²⁾ 『국조오례의』가 고려 이래 유교적 국가에 정비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세종실록』의 「오례」는 태종 때 정리된 길례와 세종 대 정리한 가례·빈례·군례·흉례 등의 四禮가 종합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다.³⁾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국조오례의』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⁴⁾ 『국조오례의』 정비 과정의 중간 단계 정도로 이해되었던 『세종실록』 「오례」(이하 「실록오례」)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은 「실록오례」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의 연구에서 「실록오례」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이 자료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록오례」에서 『국조오례의』까지의 시기는 계유정난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의 시기였다. 국가에 의 정비가 일단락되는 시기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유교적 예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의례 정비 작업의 구체적인 기록이 누락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가 글에서는 「실록오례」의 작성 경위와 내용상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15세기 전개되었던 국가예 정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에 앞서서 간단한 의문을 먼저 제기한다. 1456년(세조 2) 5월 경연석상에서 양성지는 “세종 때 상정한 儀註를 문신으로 하여금 繕寫하여 책을 만드시라”는 건의를 하여, “河緯地를 시켜 집현전에 가서 찬록하게 하겠

2) 이범직, 앞의 책

3) 김해영, 2004, 앞의 책 172~180쪽.

4) 김해영, 앞의 논문.

다”는 세조의 답변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⁵⁾ 직후에 단종 복위 사건이 터지면서 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成侃의 문집인 『眞逸遺稿』에 「五禮序」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의 「오례서」에는 세종의 지시로 집현전에서 오례를 정비하였고, 정비된 결과를 반포할 것을 지시하여서 서문을 짓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⁶⁾ 성간(1427~1456)은 20대의 나이로 요절한 인물인데, 1453년 계유년에 문과 증광시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배치되었다가 1456년(세조 2) 7월에 사망한 인물이다. 단종 때 급제하였기 때문에 세종 때 벼슬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의 문집에 수록된 「오례서」는 오례 정비와 관련된 의문을 던져준다.

성간의 五禮序는 세조 2년 무렵 이러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증거가 아닐까? 그러나 양성지가 말한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단종 2년(1454) 『세종실록』이 완성되었고, 여기에는 五禮가 수록되어 있다. 양성지의 건의는 이 오례를 책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또 세조가 대답한 하위지를 시켜 집현전에서 찬록하게 한 작업은 무엇인지. 「실록오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지 등등은 명확하게 대답이 찾아지지 않는다. 『세종실록』이 간행되었음에도 양성지는 왜 별도의 오례 정비 작업을 책으로 간행할 것을 건의하였는지, 또 세조도 그의 건의에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성간의 「오례서」가 국왕의 지시로 진행된 작업의 결과

5) 『세조실록』 4卷, 2年(1456) 5月 26日(甲午) 御經筵 侍講官梁誠之啓 世宗朝詳定儀註, 令文臣繕寫以爲成書 上曰儀註當令河緯地就集賢殿撰錄

6) 『眞逸遺稿』 卷之四 五禮序 ‘爲國以禮固也 由祭祀有吉之禮 由死喪有凶之禮 由師旅有軍之禮 由交接慶喜有賓與嘉之禮 所以維持防範而爲天下之具 信乎其闕一不可者焉 然帝王之制 代各異宜 殷之禮異乎夏 周之禮異乎殷 漢不周秦 唐不漢魏 時有推遷 事有變易 其斟酌損益 以就大中之典者 固將有待也 恭惟世宗大王 天縱聖學 經世大猷 謂我朝典章 散在有司 不可無統紀 以示後世 乃命集賢殿臣等 蒐羅類集 勒成一代之典 吉禮之日凡幾 凶禮之日凡幾 軍禮之日凡幾 賓禮之日凡幾 嘉禮之日凡幾 總若干卷 遂許頒諸中外 仍命臣序其卷編 …(후략)…’

물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면, 5월에 건의된 사항이 7월 무렵에는 벌써 작업의 결과가 매듭지어 지고 있었다는 것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 글은 「실록오례」의 간행 경위와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초기 국가에 정비 과정의 실상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양성지의 건의와 성간의 「오례서」에 대한 이해는 이 글의 검토과정에서 관련 의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 『세종실록』 「오례」의 편찬 논의와 과정

『세종실록』에는 오례(권128~135)와 악보(권136~146)·악장(권147), 지리지(권148~155), 칠정산내외편(권156~163) 등의 지가 포함되어 있다. 『세종실록』이 단순한 편년체 기록이 아니라 다채로운 지를 포함하게 된 것은 물론 세종 때의 다양한 문물 정비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정비가 있었다라도 실록을 지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편찬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일이었다. 직접적으로는 『고려사』를 최종 단계에서 기전체 사서 체제로 전환하여 정리한 경험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전에 의해 편찬된 『高麗國史』가 태조 4년 처음 완성된 이후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편년체 『고려사』가 편찬되었다.⁷⁾ 그리고 『고려국사』 이후 수차에 걸친 개정에서 편년체 형식이 고수되었다. 세종 20년 경 연석상에서 許誦가 기전체 사서의 편찬을 주장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

7)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982 참조. 이 글에서 『고려사』 편찬 과정에 대한 언급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는 본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다. 세종 31년 세종의 지시로 權蹏가 편찬한 『고려사』의 재개정이 논의될 때, 편찬의 책임을 맡게 된 김종서와 정인지 등은 기전체 사서를 제안하게 된다. 당시 편찬에 참석한 辛碩祖·崔恒·朴彭年·李石亨·金禮蒙·河緯地·梁誠之·柳誠源·李孝長·李文炯 등도 기전체로의 전환에 동조하였으나, 세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종서 등이 대리청정 중인 세자(훗날의 문종)를 설득하였고, 세자의 건의를 수용한 세종에 의해 『고려사』의 기전체 편찬이 결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종 원년 8월 완성된 『고려사』는 기전체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⁸⁾

『고려사』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인원이 이듬 해 시작된 『세종실록』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세종실록』의 편찬관이었던 49명 중 20명은 『고려사』 편찬에 참여한 인원이었다. 『세종실록』의 찬수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편찬의 공정성을 위해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대신을 배제하고 하위직 관원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⁹⁾ 그러나 결국에는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가 摠裁監修하고, 허후 김조 박중립 등이 연대별로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¹⁰⁾ 김종서와 정인지는 『고려사』를 기전체로 편찬하자고 세자를 설득하여 세종의 허락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허후는 세종 20년 경에 기전체 사서를 주장한 바가 있다. 세종 31년 『고려사』의 개정 작업에서 기전체의 도입을 주장했던 관원 중에서 유성원을 제외한 전원이 『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8) 변태섭, 앞의 책, 40-41쪽

9) 『문종실록』 12, 문종 2년 2월 2일(병인)

10) 『문종실록』 12, 문종 2년 2월 22일(병술)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표 1】 『세종실록』 편찬관

역할	인명	관직	『고려사』 편찬시 역할
監館事	鄭麟趾	議政府左議政 領集賢殿經筵事	知事
知館事	金銚	禮曹判書知經筵事	同知事
	李季甸	兵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經筵事 兼成均大司成	
同知館事	鄭昌孫	吏曹判書 集賢殿提學 同知經筵事	編修官
	辛碩祖	吏曹參判 集賢殿提學	編修官
編修官	崔恒	吏曹參判 集賢殿提學	編修官
	朴彭年	集賢殿副提學 知製教 經筵侍講官	
	魚孝瞻	禮曹參議	記注官
	河緯地	集賢殿副提學 知製教 經筵侍講官	
記注官	成三問	司諫院左司諫大夫 知製教	
	申叔舟	行集賢殿直提學 知製教 經筵侍讀官 兼知承文院事	記注官
	趙晤	行集賢殿直提學 知製教 經筵侍讀官	
	金孟獻	守判典醫監事	
	李石亨	集賢殿直提學 知製教 經筵侍讀官	記注官
	金禮蒙	知承文院事	記注官
	愼詮	守藝文館直提學	
	梁誠之	集賢殿知製教 經筵檢討官	記注官
	元孝然	成均司藝	
	金得禮	守藝文館直提學	
	尹士昀	守濟用監正	
	李甫欽	直藝文館	
	李芮	集賢殿應教 知製教 經筵檢討官	記注官
	金仁民	龍驤侍衛司左領護軍 兼副知承文院事	
	柳誠源	守直集賢殿 知製教 經筵檢討官	
	金之慶	守成均司藝	記注官
	金漢啓	成均直講 兼東部儒學教授官 承文院校理	
	權孝良	守成均司藝	
	李克堪	集賢殿校理 知製教 經筵副檢討官	記事官
	尹起畎	集賢殿副校理 知製教 經筵副檢討官	記事官
	趙瑾	守吏曹正郎 兼承文院校理	記事官
	崔士老	守司諫院右獻納 知製教	
	李誠長	守成均直講	
	崔漢卿	守成均直講	

역할	인명	관직	『고려사』 편찬시 역할
記事官	金命中	行成均注簿 兼中部儒學教授官	記事官
	徐岡	集賢殿副校理 知製教 經筵副檢討官	
	成燾	校書校理 兼承文院校理	
	金璫	行吏曹佐郎	
	李翊	行工曹佐郎	
	李孝長	行承文院副校理	記事官
	洪若治	承文院副校理	
	姜眉壽	承文院副校理	
	柳子文	行訓練注簿	記事官
	李季專	成均注簿 兼中部儒學教授官	
	李文燭	成均注簿 兼西部儒學教授官	
	李由義	右軍攝副司直 兼承文院副校理	
	全孝宇	守成均注簿 兼南部儒學教授官	記事官
	李尹仁	通禮門 奉禮郎	
	金勇	導官注簿	記事官
	韓瑞鳳	行藝文奉教	記事官
	朴纘祖	藝文奉教	
	尹子溱	行藝文待教	
	李梯林	行藝文待教	
	權綸	藝文待教	
	閔貞	行藝文檢閱	
	權以經	行藝文檢閱	
	金謙光	行藝文檢閱	
	李文煥	行藝文檢閱	
	崔漢輔	藝文檢閱	

『고려사』의 수정 작업이 종료된 후 이어서 『세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었는데, 『고려사』의 기전체 작업을 주장하거나 진행했던 인물이 거의 전원 실록 작업에 참여하였다. 『세종실록』에 다채로운 지를 포함시키게 된 데는 작업자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고려사』는 편년체 사서로 편찬되었는데, 세종31년 개정 작업에서는 기전체 사서로 체제를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은

문종 원년 마무리되는데, 『고려사』 편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관원이 그대로 『세종실록』 편집 임무를 맡게 되었다. 특히 일찍부터 『고려사』의 기전체 편찬을 주장했던 허후와 편찬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국왕을 마지막까지 설득했던 김중서·정인지 등이 실록의 책임 편찬자가 되었다. 아울러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기전체 전환에 동조하였고, 실제 주제별 편찬 작업을 담당했을 辛碩祖·崔恒·朴彭年 등의 관원이 전원 『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인적 구성상 『세종실록』 편찬 팀에는 주제 분류에 의한 지의 편집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의 체제를 논의할 때, 『태종실록』 편찬 때의 경험을 반영하여 강목체를 채택하는 문제가 검토된 바가 있었으나, 결국 편년체 형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¹¹⁾ 반면에 주제 분류에 의한 志를 작성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의가 없었다. 지의 편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다음의 인용문이다.

가) 김중서가 보고하였다. “지금 撰述하고 있는 『世宗實錄』에 대해 鄭麟趾·許詡는 ‘世宗께서 綱紀를 제정하고 禮樂을 제작한 일이 매우 많으니, 儀注와 같은 것은 마땅히 별도로 志로 만든다면 考閱에 편리할 뿐 아니라 實錄이 번거롭고 冗長한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金銚·朴仲林·李季甸·鄭昌孫은 ‘무릇 禮樂을 제작하는 일은 實錄에 날짜에 따라 기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록에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였다.¹²⁾

11) 『문종실록』 12, 문종 2년 3월 29일(임술)

12) 『문종실록』 13, 문종 2년 5월 2일(갑오) (6-490) ○金宗瑞啓 “今撰《世宗實錄》鄭麟趾、許詡曰：‘世宗立經陳紀，制禮作樂之事甚多，如儀注當別爲志，以便考閱，則實錄不至煩冗矣。’金銚、朴仲林、李季甸、鄭昌孫曰：‘凡制禮作樂之事，宜於實錄逐日以錄。’臣亦未知可否。”上曰：“於實錄詳記爲可。”宗瑞曰：“臣意亦以爲然，但鄭麟趾掌文翰者，乃曰：‘當別作志。’臣不敢違。”

인용문 가)는 지를 편집하는 논의와 관련된 기사로 추정된다. 이 논의는 문종 2년(1452) 5월 있었던 것인데, 다른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禮와 樂만을 거론하고 있다. 본 인용문에 의하면, 『세종실록』 편찬자들 사이에는 儀註를 지로 작성하는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다. 의주는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것인데, 세종 때 다양한 의식에 대한 의주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실록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정인지와 허후는 의주를 별도의 誌로 작성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김조와 박중립, 이계전, 정창손 등은 해당 날짜에 수록하자고 주장하였다. 논의는 문종에 의해 날짜별로 수록하기로 결론지어졌다.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첨부된 지들은 세종 대에 정리된 결과물을 수록한 성격이 있다. 『세종실록』의 「지리지」는 세종 10년경에 정리된 자료였다. 세종 후반대의 사정만 보완한다면, 그대로 수록이 가능한 자료였다.¹³⁾ 칠정산내외편의 경우도 세종 26년경에는 책으로 완성이 되었다.¹⁴⁾ 따라서 이 자료도 그대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악보와 악장도 이미 정비 작업이 완료된 자료였다.¹⁵⁾ 의주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문종 즉위년에 許詔는 변효문·정척이 詳定한 「喪禮儀註」는 세종이 이미 살펴본 것이며, 의정부에 마감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의정부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세종 상례의 진행을 이 의주에 따라자고 건의하였다.¹⁶⁾ 문종은 의정부의 판단을 구했는데, 의정부에서는 「五禮儀註」에 준하여 상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⁷⁾ 또 문종 원년

13) 정두희, 2010, 『왕조의 얼굴』 서강대출판부, 제4장.

14) 박성래, 2002, 「<수시력> 수용과 <칠정산> 완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4-2, 182~191쪽

15) 김종수, 1986, 『朝鮮前期 雅樂 樂懸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15.

16) 『문종실록』 1, 즉위년 3월 20일(갑자)

에는 衙日을 조정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는데, 그때도 세종 조에 이미 찬정한 儀註에 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⁷⁾ 세종 때 변효문·정척의 주도로 「五禮儀註」가 작성되었고, 세종이 이의 열람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작업은 세종 25년까지의 개정 작업을 전제로 추가로 정리한 儀註를 수록한 것이었다. 인용문 가)의 논의는 이렇게 만들어진 「오례의주」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아니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처음에 세종이 慶昌府尹 卞孝文과 僉知中樞院事 鄭陟 등에게 五禮儀註를 찬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記注官들이 實錄에 編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許詡가 “이는 國論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변효문 등 몇 사람이 찬술한 것이다. 세종께서 나와 鄭麟趾에게 명하여 정부와 함께 다시 考定하도록 하였으나 미처 볼 겨를이 없어 檢詳司에 이를 묶어 두었다. 이는 완성된 글이 아니므로 편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는 비록 변효문 등이 편찬한 것이지만 실은 睿裁에서 나왔으니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閣에 버려두고 교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부의 게으른 과실이지 어찌 세종의 뜻이겠는가? 만약 완성된 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周禮』도 완성된 글이 아니다. 그러나 후세에 考證할 바가 있으니, 이제 이 五禮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김종서는 “정부의 考定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일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니 편입할 수 없다.” 하니, 정인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禮樂은 가장 큰 것이니, 一代의 예악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정부의 考定을 기다려서 今上의 實錄에 편입하면 좋겠다.” 하였는데, 정인지가 “세종께서 정한 五禮를 금상의 실록에 편입하면 사실에 어긋남이 없겠는가?” 하니, 김종서가 대답을 못하였다.

17) 같은 자료

18) 『문종실록』 10, 1년 10월 23일(무자)

그러나 마침내 기록하지 못하였다.¹⁹⁾(밑줄과 강조는 필자)

인용문 나)는 『세종실록』의 지를 편집하는 문제에서 허후와 정인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용문 가)에서 허후와 정인지는 『세종실록』에 예지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국왕 문중에 의해 기각되었다. 단종이 즉위한 시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이 시점에서 허후와 정인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인용문 가)에서는 두 사람 모두 『禮志』의 편집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인용문 나)에서 허후는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용문 나)는 단종 즉위년(1452) 9월에 있었던 논의인데,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변효문과 정칙에 의해 정리된 「五禮儀註」는 이미 문종 초부터 그 적용 여부가 논의되던 자료였다. 세종 26년 오례의주를 상정하라는 세종의 지시가 있었다.²⁰⁾ 이 지시는 집현전에 내려진 것이었는데, 해당 기사에는 僉知中樞院事 卞孝文과 鄭陟, 成均司藝 閔瑗, 集賢殿校理 河緯地, 博士 徐居正, 校書校勘 朴元貞, 承文

19) 『단종실록』 3, 단종 즉위년 9월 13일(임인) 初 世宗命慶昌府尹卞孝文·僉知中樞院事鄭陟等 撰定《五禮儀註》 至是 諸記注官以爲 當編入實錄 許詡曰 此非國論所定, 乃孝文等數人所撰 世宗命臣詡及鄭麟趾 同政府 更加考定 未暇披閱 束之檢詳司 是乃未成之書 不可編入 麟趾曰 是雖孝文等所撰 實出睿裁 不可不錄 其廢閣不校 乃政府懶慢之過 豈世宗之意乎 若曰未成之書 則《周禮》亦非成書也 然後世有所考證 則今此《五禮》 不可不錄也 金宗瑞曰 不經政府之考 且事未施行 不可編入 麟趾曰 爲國 禮樂最大 一代禮樂 不可不傳 宗瑞曰 待政府考定 編入今上實錄可也 麟趾曰 以世宗所定《五禮》 編入今上實錄 則無乃失實乎 宗瑞無以對 然終不錄 (이하는 본문에서 생략) 記注官申叔舟揚言曰 凡君上所欲爲 雖是美事 苟不先與大臣議之 則事竟不行 今《五禮》 世宗親自筆削 取捨損益 斷自宸衷 手澤尙存 吾輩久叨侍從 素所目擊 世宗精力所寓 莫加於此 舍是不錄 而反錄一禮曹郎官所撰儀注 甚無謂也 許四宰之欲不錄者 惡孝文等多改許政丞所定儀注 而政府之不欲者 嫌世宗不先與政府議也 人臣無將 此眞所謂將也 爲人臣 安可以此事君乎 諸記注官 亦皆非之

20) 『세종실록』 106, 세종 26년 10월 11일(병진)

院副正字 尹愬 등이 의주 정리 작업의 참여자로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업은 이미 마무리되어 세종이 열람하였고, 의정부의 검토를 거쳐 마감될 예정이었다. 허후는 이 「오례의주」가 마감된 작업이 아니므로 『세종실록』에의 수록을 반대하고 있고, 김종서의 경우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작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인지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의 경우는 이 작업이 세종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세종의 열람을 거쳤으므로 『세종실록』에 수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인용문 가)에서 의례를 만드는(制禮) 근거 자료로서의 儀註는 완성 여부가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의례의 의주를 실록 자체의 考覽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따로 편집하자는 것이었다. 비록 이 의견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허후는 이 점에 대해서 정인지와 동의하고 있었다. 반면에 인용문 나)의 미완성된 「오례의주」에 대해서는 실록에의 편입을 반대하였다.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편입된 다른 지들이 공식적으로 마감된 결과물이었던 것과는 달리, 변효문 등에 의해 상정된 「오례의주」는 아직 의정부의 검토가 종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용문 가)와 나)의 작업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성격이다. 가)에서는 세종 때 만들어진 儀註를 『세종실록』에서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반면에 나)는 세종의 지시로 변효문·정척 등이 정리한 「五禮儀註」 작업을 『세종실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禮志로 정리하는가의 여부를 논의하는 점은 유사하지만, 예지로 정리하는 대상이 되는 자료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결정된 사항에 의하면, 가)의 경우는 세종 치세 전 기간에 작성된 의주를 별도의 부록으로 편입하지 말고 해당 날짜에 삽입하도록 하였고, 나)의 결정은 변효문이 정리한 오례의주를 『세종실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어떠한 논의의 결론은 부록으로 「예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인용문 나)는 문종이 사망한 직후 시점인데, 이때 『세종실록』에 예지를 추가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 연간에 진행된 의례 정비 작업과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의주는 『세종실록』의 편년 기사로 흡수되었다. 그렇게 하여 『세종실록』의 부록에서 「예지」는 배제된 상태로 편집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변효문 등이 편찬한 「오례의주」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의 의례 과정에서 참조되고 적용되고 있었다. 또 이 작업은 실무자 선에서는 세종 생전에 보고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된 것이었다. 바로 이 자료의 실록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인용문 나)의 논의였고, 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결론은 편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허후가 반대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신숙주는 허조가 태종 때 했던 길례 작업을 변효문 등이 변경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나)-1 신숙주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중략)... 지금 五禮는 세종께서 친히 쓰고 지우며, 취하고 버리고, 덜고 더하는 것을 스스로 단정하여 手澤이 아직 남았고, 우리들이 오랫동안 외람되어 侍從하며 평소에 目擊하였는데, 세종이 精力을 기울인 바가 이보다 더함이 없었다. 이를 버리고 기록하지 아니하면서 도리어 禮曹郎官이 편찬한 儀注를 수록하게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 許四宰(허후)가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은 변효문 등이 許政丞이 정한 『의주』를 많이 고친 것이 싫어서이고,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은 세종이 먼저 정부와 의논하지 않은 것을 혐의한 때문이다. 『단종실록』 7, 단종 즉위년 9월 13일(壬寅)

나)-1은 인용문 나)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신숙주의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신숙주에 의하면, 허후(許四宰)는 자신의 선친인 허조(許政丞)가 태종 때 작성한 의주를 변효문 등이 많이 고쳤기 때문에 이를 싫어하여 이

들의 작업 결과를 『세종실록』에 수록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허조의 작업은 태종 15년과 16년 작성된 「諸祀儀式」과 「諸祀序例」를 의미한다. 태종 때의 諸祀儀式과 諸祀序例는 이미 세종 치세 기간 중에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고, 수정 규정에 준하여 관련 사항이 다시 정리된 바가 있다.²¹⁾ 변효문 등의 길례 정비는 세종 대의 개정 사항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 작업은 허후를 포함한 의정부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간 사안이었다. 결국 변효문 등이 수정한 작업은 의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치면 현실의 行禮에 적용되는 오래 儀註로 기능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태종 때, 작성된 의주가 수정된 것을 꺼려서 「오례의주」의 실록 편입을 반대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로 보인다.

정리하면, 인용문 가)와 나)는 각각 문종과 단종 때 『세종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예지」의 편입을 배제한 의논이었다. 가)는 세종 때 작성되었던 전반적인 의주를 별도의 부록 형태가 아니라 편년 기사에 삽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예지」의 편입이 무산된 것이었다. 인용문 나)는 세종의 지시로 작성된 「오례의주」가 작업자에 의해서는 완성되었지만, 의정부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완결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록에의 편입을 거부한 결정이었다. 실록에는 이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 이유가 매우 사적인 것이었다는 해석이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은 단종 2년 3월에 완성되었다.²²⁾ 『세종실록』에는 五禮가 편년 기사에 이어 여러 부록 중에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다. 문종과 단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오례」는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두 번의 결정이 반복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실록오례」에는 간단한 서문이 첨부되어

21)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제3장 참조.

22) 端宗 2년(1454) 3월 30일(辛巳)

있는데, 다음 인용문이 그것이다.

다) 국초에는 草創이라 일이 많아서 禮文을 갖추 수 없었다. 太宗이 許稠에게 명하여 吉禮의 序例와 儀式을 撰하게 했으나, 다른 의례는 미처 찬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양 큰일을 만나면 禮官들이 그때에 채량한 것을 취하였다. 임금이 이에 鄭陟과 卞孝文에게 명하여 嘉禮·賓禮·軍禮·凶禮 등의 禮를 撰定하게 하니, 本朝에서 이미 시행하던 典故와 아울러 唐·宋의 옛 儀禮와 명나라의 제도를 취하였다. 그것의 버리고 취함과 줄이고 보탠 것은 모두 임금의 판단을 받았으나 끝내지 못했고, 冠禮도 講究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미 완성된 四禮와 허초가 찬술한 吉禮를 아울러 實錄의 끝에 덧붙인다. (밑줄과 강조는 필자)

인용문 다) 「실록오례」의 서문은 사실 관계에 약간의 왜곡이 있다. 세종 26년 집현전에 대한 국왕의 지시는 五禮儀註를 상정하는 것이었다. 본 인용문에는 정척과 변효문이 四禮만을 찬정한 것처럼 언급되어 있다. 정척과 변효문은 세종의 지시에 따라 오례를 정리하였다. 이들의 작업 결과는 이미 의정부에 넘어서서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변효문 등이 진행한 오례 전체에 대한 정리 작업은 전체가 아니라, 四禮만이 『세종실록』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문에 따르면, 「실록오례」에서 길례 부분은 허초의 찬정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런 결정이 전혀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 정리한 五禮儀註는 공인된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태종 때 작성한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는 공인되어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었다. 따라서 길례 영역은 공인된 사항을 수용하고, 나머지 四禮만 새로 정리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조정은 나)-1 신숙주의 언급처럼 길례의주의 수정에 허후가 꺼려하고 있었다면, 그의 우려도 불식시키는 방안이기도 하였다.

나) 기사는 계유정난 반대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

록인데, 이를 통해서 『세종실록』에 五禮가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제한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인용문 가)에 보이는 것처럼 허후는 예지 자체의 편집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신숙주의 주장에 의하면 선친인 허조가 찬정했던 태종 때의 禮制가 수정되는 것을 우려했다. 개인적인 의견에 상관없이 변효문이 찬정한 「오례의주」는 의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록에 편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세종실록』에 禮志가 수록되어 있다. 이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인데, 인용문 나)에 의하면 단종 즉위년 9월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인용문 다)에 의하면 「실록오례」는 허조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를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변효문 등에 의해 찬정된 四禮를 종합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허후가 아버지 허조가 주도한 「제사의식」과 「제사서례」의 수정에 꺼려한다는 입장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할 것 같다.

허후는 『세종실록』의 찬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후는 계유정난 직후인 단종 원년 11월에 처형되었고,²³⁾ 단종 2년 완성된 『세종실록』의 찬정자 명단에서 누락되었다. 인용문 나)에 의하면, 단종 즉위년 9월까지 「실록오례」의 수록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변효문 등이 찬정한 「오례의주」는 실록에 편입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이 작업을 이미 세종이 열람했고 의정부에 검토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이의 수록을 주장하는 의견은 간단하게 묵살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반대 여론과 허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조에 의해 작성된 허조의 「제사의식」과 「서례」를 길례 영역에 수록하고, 변효문 등이 찬정한 오례에서 길례를 제외한 四禮를 종합하여 「실록오례」가 편집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단종 원년 10월에 있었던 계유정난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허후가 계유정난 발발 직후 처형되었고 결국 『세종실록』 편찬자 명단에서도 배제되었

23) 『단종실록』 9, 단종 1년 11월 11일(계해)

다. 이런 와중에 그의 입장을 존중한 「실록오례」의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실록오례」는 계유정난 발발 시점에서는 이미 『세종실록』에 수록된 상태였다고 추정된다. 허후를 『세종실록』의 찬정자 명단에서는 제외했지만, 그의 주장을 고려하여 편집이 완료된 「실록오례」의 작업 결과는 부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세종 31년 『고려사』를 기전체 사서로 최종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작업에 참여했던 집현전 중심의 관원들이 거의 대부분 『세종실록』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정인지·허후를 비롯한 다수의 관원들은 『세종실록』의 연대기 기사를 편년체 원칙에 준하여 편집하기로 하면서 『고려사』의 편찬 경험을 배경으로 다양한 지를 부록의 형태로 수록하였다. 다만 의주의 경우는 별도의 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성 시점의 해당 기사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변효문·정척 등이 편찬한 「오례의주」도 처음에는 『세종실록』에 수록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과정을 거쳐 「실록오례」로 수록되었는데, 길례 항목은 태종 때 공인된 「제사의식」과 「서례」를 수용하고, 나머지 四禮는 변효문 등이 개정된 사항을 수록하였다. 결국 「실록오례」는 편찬자 사이의 이견을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실록오례」의 성격과 예지로서의 완성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실록오례」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다음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째 인용문 가)의 논의 과정에서 편년 기사에 의주를 편입하기로 한 결정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 결정에 의해 『세종실록』에는 다양한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의주는 별도의 예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이들 의주를 통해 가능한 예지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둘째는 인용문 나)의 논의를 통해 결국에는 만들어진 「실록오례」는 예지로서 합리적인 혹은 일관된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록오례」가 편입되어 있음에도 양성지는 별도로 세종 때의

찬정 「의주」를 책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실록오례」에 대해 이미 세조 초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II. 『세종실록』 수록 儀註와 禮志 구성의 가능성

『세종실록』은 어떠한 실록보다 많은 분량의 의주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종 때 『세종실록』의 편찬 원칙을 마련하면서, 의주를 별도의 부록 형태가 아닌 편년 기사의 해당 날짜에 수록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종 때 작성된 儀註를 해당 날짜에 수록하는 방식과 별도의 부록으로 만드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표 2】는 『세종실록』에 수록된 의주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의식의 해당 의주 및 분류 사항은 【부표 1】에 정리하였다.²⁴⁾

【표 2】 『세종실록』 수록 의주

구분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기타	합계
의주	37	88	4	5	163	3	300
비율	12.3	29.3	1.3	1.7	54.3	1.0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사 중에 확인되는 의주는 흉례가 54%로 전체 의주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점하고 있다. 가례가 88개의 의주로 약 30%에 해당하고, 길례가 37개로 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실록

24) 이 장에서 세종대 의식과 의주에 대한 서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표 1】에 정리된 내용에 의한 것이다.

오례』 및 『국조오례의』의 의주가 각각 163개와 209개인 점을 고려한다면,²⁵⁾ 『세종실록』 기사 중에서 확인되는 의주 300종은 적지 않은 분량임을 알 수 있다.²⁶⁾ 그런데 이들 의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의주는 성격상 중복되거나,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의주가 누락되었거나, 혹은 특정한 영역에 치우쳐 있다.

1. 길례 의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제사 의식인 길례는 『세종실록』에 37개 의주가 실려 있다. 국가에서 규정한 유교적 제사는 대·중·소사로 구분된다. 조선의 경우 종묘와 사직을 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의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조선은 제사에서 대·중·소사 구분을 고려 때의 것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유교국가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하게 된다.²⁷⁾ 【표 4】는 조선에서의 의례 정비 과정에서 적용된 제사의 구분을 정리한 것이다.

25)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오례별 의주의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구분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합계
실록오례	35	45	6	8	69	163
국조오례의	56	50	6	6	91	209

26) 의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27) 조선의 祀典體制에 대해서는 주1)의 김태영, 김해영, 이욱, 한형주 등 글 참조.

【표 4】 조선 초기의 祀典 분류

	詳定古今禮	태종 13년 ²⁸⁾	「실록오례」
大祀	圓丘 方澤 社稷 宗廟 別廟	社稷 宗廟 別廟	社稷 宗廟
中祀	先農 先蠶 文宣王	先農 先蠶 文宣王(+州縣文宣王) 風雲雷雨(+山川·城隍)	風雲雷雨(+山川·城隍) 嶽海濱 文宣王 檀君 箕子 高麗始祖 先農 先蠶 雩祀
小祀	風師 雨師 雷師 靈星 司寒 馬祖 先牧 馬步 馬社 祭祭 七祀 州縣文宣王	司寒 馬祖 先牧 馬步 馬社 祭祭 七祀	靈星 名山 大川 司寒 馬祖 先牧 馬社 馬步 祭祭 七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대사인 사직에서 국왕이 직접 제사하는 社稷親祭儀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다. 사직단은 태종 때 『홍무예제』를 반영하여 하나의 同壇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종 12년 박연의 상서를 계기로 세종 14년 社壇과 稷壇으로 나누어졌다.²⁹⁾ 세종 14년에 사직 섭사의가 작성된 것은 제사단의 변화 때문이었다. 국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진행하는 섭사의는 만들어졌지만, 국왕의 친제의는 세종 때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사직친제의는 세조 때 비로소 작성되었다.³⁰⁾ 이런 이유로 『세종실록』에는 사직친제의가 수록되지 않았다.

종묘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다. 종묘친제의는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의주 자체가 작성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태종 말년에 종묘 및 건원릉의 제사 규정이 논란 끝에 만들어진다. 종묘의 제도 자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주가 작성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제사 의식의 규정에 전반적인 변화가 시도되었고, 의주의 부분적인 변화는 분명히 확인된다. 현재 『세종실록』의 날짜별 기록에는 이렇

28) 『태종실록』 25, 태종 13년 4월 13일(신유). 『상정고금례』의 규정도 이 기사를 참조하였다.

29) 박경지, 2012, 「조선초기 사직 친제의례의 정비와 그 의미」, 『사총』 75, 10-13쪽.

30) 박경지, 앞의 글, 13-15쪽.

게 개정된 의주를 따로 수록하고 있지 않다.³¹⁾

세종 후반 전반적인 길례 의식을 수정하는 원칙이 작성되었는데, 이때는 국정이 왕세자에 의해 대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세자에 의해 종묘제례가 대행되는 의주만 작성되었다. 37개의 길례 의주 중 문소전 의주가 5개, 광효전 3개 의주, 휘덕전 1개 의주 등 원묘 관련 의주가 9개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친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묘 의주만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사의 경우도 제대로 된 의주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중사와 소사에 해당하는 의주가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보이지 않는다. 중사의 風雲雷雨祭는 조선에서 통합된 제사 의식이다. 고려에서는 각각 제사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합쳐 풍운뇌우를 주 제사 대상으로 정한 후, 여기에 山川과 城隍을 협사로 하여 통합하였다. 이 의식은 해당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³²⁾ 문선왕 관련 의식은 고려 때는 중앙과 지방이 중사와 소사로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에서는 지방의 문선왕 의식을 중사로 승격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새로 작성한 의주가 확인된다.³³⁾ 그러나 이 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중사 의식은 의주가 확인되지 않는다. 소사의 경우는 대부분 의식의 의주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세종실록』의 날짜별 기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 의주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관련 의주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의주가 작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길례 의주 자체는 36개나 수록되어 있지만, 대·중·소사의 구분에 부합하여 정돈된 체계를 갖추어 구성되지 않았으

31)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32) 부표 214번, 세종 21년 1월 16(을미) 의주.

33) 세종 11년 문묘작현의와 세종 17년 문묘전알의가 수록되어 있다(부표 참조).

며, 각 의주 간의 일관성은 더욱 찾기 어렵다. 태종 때 「제사의식」과 「제사서례」가 작성된 이후, 세종 때 국가 제사 의식은 수차례 수정되었는데, 『세종실록』에는 이를 수용한 의주가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2. 가례 의주

총 88개가 있는 가례 부분의 경우에는 17개의 의주가 세종의 즉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의식은 세종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행 원칙에 따라 시행한 것이었다. 조선의 가례 영역의 의식은 세종 12년 말부터 음악의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재정비되는데, 세종 12년 말부터 수록되는 다양한 의주는 이러한 정비 작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세종 13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의식은 성격이 달라진다.³⁴⁾ 또 세종 25년 이후는 왕세자의 대리청정에 따라 이와 부합되는 의식을 새로 제정하였다. 세종 25년 이후의 의주는 국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례의식 일반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때 등장하는 의주는 주로 왕세자에 의해 국왕의 의식이 대행될 때의 의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세종 12년 이전 의식의 경우 세종의 즉위식 관련이 16개 의주, 세종 3년 왕세자 책봉 관련이 6개 의주, 왕세자 혼례 의주가 8개 의주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가례 의주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세종 25년 이후는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식의 의주이므로 일반적인 의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세종 12년 이전의 의주는 세종 대에 와서 이루어진 의례 개정 작업

34) 세종 12년과 13년 사이의 朝儀 의식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강제훈, 2007,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한국사연구』 137, 189-204 참조. 이 장에서 세종 12년과 13년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기준 시점은 세종 12년 윤12월이 된다.

이전의 것이라는 점, 25년 이후의 의주는 왕세자 관련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의식을 배제할 경우 집중적인 검토 대상은 세종 13년 이후 25년 이전의 27개 의주로 좁혀진다. 세종 12년까지의 49개 의주와 세종 25년 이후의 12개 의주는 세종 대에 정비된 일반적인 의식의 의주로 분류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88개나 되는 많은 수의 가례 관련 의주가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를 세종 때 개정된 원칙에 의해 작성된 의주를 선별하게 되면, 27개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록오례」의 45개 의주, 『국조오례의』의 50개 가례 의주와 비교할 때 약 절반 정도의 분량이 된다.

가례 영역의 의주는 크게 조정에서 진행되는 朝儀 관련 의주, 관·혼례 의주, 중국 황제 관련 의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데, 27개 의주에서 관·혼례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관련 의식은 실록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朝儀 관련 의주의 정비 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되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가례 분야 의주의 수록 상황을 정리하면, 이 분야 역시 길례와 마찬가지로 「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와 같은 禮典에 수록된 일관된 체제와 관련 의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상의 구성을 갖추기 어려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의주를 실록에 부록의 형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흉례 의주

흉례의 경우 가장 많은 의주가 등장하는데,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상의 흉례 의주는 정종과 태종, 원경왕후와 소헌왕후, 문

종의 세자빈인 현덕빈의 상·장례와 관련된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63개의 의주 중 144개 의주가 이들 상·장례와 관련된 것이다.

【표 5】 세종 대의 주요 상·장례 상황

연도	대상	등급	의주	관계와 특징
세종 1년	정종	상왕	32	상왕, 태종과 세종이 시행하는 의주
세종 2년	원경왕후	왕비	30	태종비, 국왕 생존
세종 4년	태종	상왕	28	상왕으로 사망
세종 23년	현덕빈	왕세자빈	16	문종왕세자빈, 국왕/비, 왕세자 생존
세종 28년	소현왕후	왕비	38	세종비, 국왕 생존

정종의 경우는 왕위에서 물러난 상왕이었고, 이와 별도로 태종이 현재의 상왕으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국상이었다. 현 국왕인 세종이 상주가 아니라 상왕 태종이 상주였다. 그러므로 이들 의주는 왕위를 계승한 현재의 국왕이 사망한 선왕을 위해 시행하는 형식의 의례를 담고 있지 못하다. 즉 정종의 국상 의례는 국상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정종의 상례는 상례 기간을 月을 日로 계산하여 27일만에 약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세종 4년에는 태종의 국상이 있었다. 조선의 일반적인 국상의 상·장례는 이때의 의식이 기본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 경우는 현 국왕의 친부이면서 前王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왕 상·장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태종이 上王의 지위에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경왕후와 소현왕후의 경우는 국왕이 생존한 상태에서 부인이 먼저

35) 태조의 상장례의 경우는 자세한 의주를 확인할 수 없다. 정종의 경우는 상왕의 성격이면서 약식으로 진행된 상장례였다.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장례로 설정되었고, 원경왕후의 경우는 태종에 의해 국상 기간이 짧게 조정되었다. 이런 이유로 두 왕후의 상·장례 의주는 수정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실록에 별도로 수록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남편인 국왕이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왕후의 상·장례라는 점에서 의례의 성격이 중복되는 의주임은 분명하다. 반면에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되는 국왕이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왕후가 사망하는 경우 수행하게 되는 왕후의 상·장례 의식은 『세종실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가 당시에는 실제로 야기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세자빈의 상·장례는 수록하고 있지만, 세자의 상·장례, 왕자·공주 등의 상·장례 의주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 의식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의주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실록오례」의 흥례는 6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왕의 상·장례 하나의 의식을 정리한 것이다.³⁶⁾ 『국조오례의』의 경우는 91항목인데 국휼 관련 사항이 68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이 치르게 되는 상례 의식과 大夫士庶人喪儀로 구성되어 있다.³⁷⁾

『세종실록』에 현재 수록된 의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종실록』의 의주가 독립적인 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체제에 의해 정리 작업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로 별도로 수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직과 종묘의 친제 의식은 세종 대의 정비 내용에 부합되게 별도의 의주를 작성해야 했다. 따라서 실록을 편찬하면서 새로운 의주를 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었다.

세종 대 정리된 의주를 독립된 예지로 만들자는 의견은 의욕적이기는

36) 이범직, 『한국중세예사상연구-오례를 중심으로-』 일조각, 1991, 356쪽.

37) 김혜영, 「조선 초기 예제 연구와 『국조오례의』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72~73쪽.

하지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세종 대에 의례와 관련된 다양한 정비 작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체제를 갖춘 별도의 禮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세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의주를 해당 날짜에 수록하기로 한 결정으로 『세종실록』의 수록 의주가 짜임새를 갖출 필요성은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주를 부록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상당한 정도의 편찬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의주를 부록으로 만들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실록 편찬 과정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 수록된 의주의 상황은 이들 의주가 「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와 같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데는 구성상 쉽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의주가 예지로 편집되기 위해서는 현재 『세종실록』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체제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의주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그들이 예지의 형태로 분류되어 수록될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고려사』의 禮志는 「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는 序例와 儀註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의주는 의식의 순서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서례는 각 의식에 공통적인 요소와 의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태종 때 길례 부분은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의식을 의주만으로 기록하여 관련 사항을 집약하는 것보다 한층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고려사』의 예지는 이러한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간상의 촉박함이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려사』가 기본적으로 역사 서술이었기 때문에 예지에 특정 항목을 설정한 다음 관련기사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

는 점이다. 즉 역사서술의 일부이므로 예지가 독립된 완결성을 가질 필요가 크지 않았다. 실제의 『고려사』 예지는 이런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인용문 가)에서 정인지와 허후가 제안했던 의주의 정리방식은 『고려사』 예지 수준의 느슨한 편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면, 『세종실록』의 禮志는 다른 지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지들은 하나의 독립된 형식을 갖춘 편찬물이었다면, 예지는 역사 서술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논의에서는 이런 방식의 정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세종실록』의 의주를 날짜별로 편집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록오례」가 『세종실록』에 수록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출발할 때 「실록오례」는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세종실록』 「오례」의 禮志로서의 완결성

『세종실록』 기사 중에 수록된 의주가 특정의 행사에 적용되었던 의식을 정리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실록오례」의 수록 내용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식을 진행하는 절차와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책의 완결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 과연 「실록오례」는 현실의 의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당시의 의식 정비 단

계를 고려한 수준으로 체제 내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오례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길례·가례·흉례는 각각 정리의 기준이 있었다. 길례의 정비는 국가 차원에서 제사의 상중하 등급 구분과 제사 대상의 天·地·人 구분에 따라 의식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문제가 주 고려 대상이었다. 흉례의 경우는 중국 역대의 고제와 함께 유교적 의례, 구체적으로는 『주자가례』가 추구하고 있는 형식과 내용을 구현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었다.³⁸⁾ 가례의 경우도 고려 이래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정책 담당자가 설정한 親王 등급에 따른 유교 의례를 구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 각 의례 범주의 개별적인 문제의식과 별도로 이들을 하나의 의례서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의식의 패턴에 주목하여, 조선의 오례는 일관된 형식을 추구하고였고, 그 결과물이 禮典이었다는 전제 아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세종 대 길례 정비 사항의 미반영

제사의식은 參神 + 獻酌 + 飲福 + 辭神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는 天神·地祇·人鬼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절차가 포함되는데, 천신 제사에서 祝幣를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하는 절차를 구성하거나 지기 제사에서 毛血을 땅에 묻는 절차, 인귀 제사의 晨裸 절차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든 제사에는 신을 만나는 參神과 신에 대한 行禮로서 헌작, 상호작용의 증거인 음복 절차가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신과 헤어지는 辭神

38) 『주자가례』는 家禮를 지향한 것으로 국가에 체제와는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조선의 경우는 국상이 발생하는 경우 행례의 원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례, 특히 『주자가례』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상세한 논의는 별고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의 절차가 있게 된다.³⁹⁾ 다음은 이러한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형태상으로 동일한 拜禮의 경우도 순서에 따라 만나는 인사일 수도 있고, 헤어지는 인사가 될 수 있다.

<의식의 기본 패턴>

拜禮 + 行禮 + 拜禮

당·송의 제사 의식에는 參神과 辭神 절차에서 두 번 절하는 再拜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獻酌에도 再拜하고, 음복 후에도 재배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었다. 태종 이전 조선에서는 「홍무예제」를 근거로 참신과 사신에는 四拜를 하도록 규정하고, 헌작에는 배례가 없이 음복 후에 재배하도록 제사 절차를 구성하였다.⁴⁰⁾

종묘에서의 참신과 사신은 서향하여 배례를 행한다. 국초 이래 이 원칙은 일관하여 지켜졌다. 문제는 헌작과 음복 후의 배례 유무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었다. 허조는 배례가 있어야 하며, 방향도 北向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조에 의해 주장되었던 작헌 후의 재배 절차는 당의 「개원

39) 유교 의례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금장태, 『귀신과 제사; 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2009, 2장 참조.

40) 拜禮의 구성은 조선 초기 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당개원례』나 『통전』, 『문헌통고』 등 당과 송에서 정리한 의식에서의 국가 의례는 再拜를 절차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 초기에 주로 참고한 『홍무예제』 등의 명나라 의식은 四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선은 명의 의식을 참조하고자 했으나, 적절한 참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과 송의 의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선에서 접할 수 있는 명의 자료를 참조하여 의식을 구성해야 했다. 그런데 명의 경우는 『皇明制書』 『禮部職掌』에서 五拜는 황제에 대한, 四拜는 친왕에 대한 배례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배례의 이러한 규정은 조선이 참조했던 당과 송의 의식에서는 확립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이런 점에서 배례의 회수는 해당 의주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⁴¹⁾ 하륜은 명나라의 「홍무예제」에 근거하여 작헌 후의 배례를 반대하였다. 하륜의 주장은 국초 이래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두 입장의 강한 대립으로 실제의 의식은 양자가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당제와 명제가 혼합된 형식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태종 13년⁴²⁾과 15년⁴³⁾에 제사의식에 대한 개정이 연이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이 진행되어야 했던 이유는 대립된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⁴⁾ 이런 과정을 거쳐 태종 15년 이른바 「諸祀儀式」이 제정되었고,⁴⁵⁾ 이듬 해에는 「諸祀序例」가 제정되었다.⁴⁶⁾ 그런데 이때의 의식 제정에는 陵祭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태종 16년 建元陵祭儀가 새로 제정되었다.⁴⁷⁾ 사료상에 당시 제정된 의식 패턴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술이 존재한다. 태종 15년 종묘 친제를 제정할 때는 매 실마다 헌작한 다음 배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에 대한 헌작이 모두 시행된 다음 북향하여 재배하는 總拜를 행하도록 결정되었다.⁴⁸⁾ 반면 태종 17년 기록에는 종묘 친제에는 매 실마다 북향재배하는 절차가 시행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⁴⁹⁾

태종 때의 길례 의식은 기본적으로 ‘四拜 + 行禮(작헌과 음복) + 四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행례 부분에서 허조는 작헌 후에 배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종묘에서의 제사 의식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 태종 16년 작성된 건원릉 제의에도 동일한 절차를 고수하였다. 반면에 사직과 산천, 문선왕 등의 제사 의식에서는 작헌 후에 배례가 없

41) 『태종실록』 22, 태종 11년9월 11일(기사)

42) 『태종실록』 25, 태종 13년 4월 13일(신유) 및 6월 8일(을묘)

43) 『태종실록』 29, 태종 15년 1월 16일(을묘)

44) 태종 13년에서 16년에 이르는 기간에 전체적인 祀典體制가 정비된다.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만 언급한다.

45) 『태종실록』 29, 태종 15년 3월 3일(신축)

46) 『태종실록』 31, 태종 16년 5월 23일(갑인)

47) 『태종실록』 33, 태종 17년 4월 28일(갑신)

48) 『태종실록』 29, 태종 15년 1월 16일(을묘)

49) 『태종실록』 34, 태종 17년 12월 14일(을미)

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태종 때 제정된 「제사의식」에 수록된 의례 절차는 동일한 길례 의식임에도 의식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종 때 의례 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는 세종 15년에 대·중·소사 의식에 종묘 및 능제와 동일하게 작헌후 再拜를 시행하도록 하여 의주를 수정하여 제양을 일치시키도록 결정하였다.⁵⁰⁾

세종 22년에 다시 의주를 수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정월에 있었던 논 의에서는 참신과 사신에서는 四拜인데, 晨裸이나 獻酌, 飲福 후에 두 번 절하는 再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검토되었다. 당시 입수된 명나라의 「皇帝時享太廟儀」에 의하여 작헌 이후의 배례를 없애고, 음복 후에 四拜 하는 것으로 절차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종묘를 포함한 전체 길례 의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⁵¹⁾ 이해 11월에는 다시 의식이 수정되었는데, 명나라의 『諸司職掌』을 참조한 결과 종묘와 문소전, 사직에서는 음복 후에 사배를 그대로 하지만, 나머지 제사의 경우는 음복 후에 再拜를 하도록 하였다.

변효문 등이 정비한 오례 중의 길례의식은 기본적으로 세종 22년의 수정 사항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오례」의 길례 서례와 의식은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록오례」는 세종 때 이루어진 의식 패턴의 변화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조오례의』의 길례 의식은 대·중·소사의 구분 없이 일체의 배례는 四拜로 통일되어 있다. 「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 길례 의식은 패턴의 통일이라는 문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효문 등이 개정한 五禮儀註의 길례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속단할 수 없다. 세종 22년의 규정은 大祀와 中·小祀의 배례 패턴을 달리하여 의식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변효문 등은 이러한 개정

50) 『세종실록』 61, 세종 15년 윤8월 24일(갑술)

51) 『세종실록』 88, 세종 22년 1월 8일(신해)

규정이 마련된 이후 다시 오례의주의 개정을 지시받았다. 이들이 세종 22년의 규정에 준하여 의주를 작성했는지 혹은 『국조오례의』와 같이 제사의 등급에 상관없이 일관된 배례 패턴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실록오례」의 길례 의식은 서로 다른 방식의 의식 패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배례의 횟수가 일관되지 않으며, 行禮 부분에 해당하는 헌작과 음복 후의 배례 구성에서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실록오례」의 서례와 의주의 일관성 문제이다. 「실록오례」의 서례는 왕릉의 제사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주 부분에서는 왕릉 제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태종 때 「제사의식」이 먼저 작성되고, 이어서 「제사서례」가 제정되면서 서로 내용상의 불일치가 발생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록오례」의 길례 영역은 태종 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수록한 것이었다. 세종 때의 실록 기록에 의하면, 태종 때 작성된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바가 없다. 부분적으로 규정의 수정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를 총괄적으로 대체할 길례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서례」를 공인된 자료로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 대한 다양한 수정 사항을 「실록오례」의 길례 영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의 「실록오례」 길례 서례와 의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리하면,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는 의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당·송과 명의 의식 절차 사이의 명확한 조정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양자 사이의 기준이 혼재된 상태였고, 의식과 서례 사이에도 규정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자료였다. 세종 때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과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실록오례」는 세종 때 진행된 길례 부분의 개정 및 보완 작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나머지 사례의 의식이 도달하고 있는 정리 수준과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嘉禮 의장 제도의 미비와 정리 방식의 불일치

배반도는 해당 행사의 배치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국왕부터 문무 관원의 위치는 물론 의장과 기물, 시위병력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는 의식의 순서를 기술한 儀註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는 위치 정보를 포괄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의장 부분에 집중하면, 「실록오례」의 배반도는 그렇게 체계적인 자료는 아니다.

【표 6】 국조오례의 배반도 의식과 의장

	국조오례의		『세종실록』오례	
	의식	의장	의식	의장
①	正至及聖節望闕行禮圖	黃儀仗	正至及聖節望闕行禮圖	黃儀仗
②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圖	紅儀仗	勤政殿拜表圖	黃儀仗
③	勤政殿正至誕日朝賀圖	大仗	正至及誕日勤政殿朝賀圖	大仗
④	勤政殿正至會百官圖	半仗	正至會百官圖	半仗
⑤	勤政殿朝參圖	小仗	會禮宴圖	?

「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에는 5개 의식의 배반도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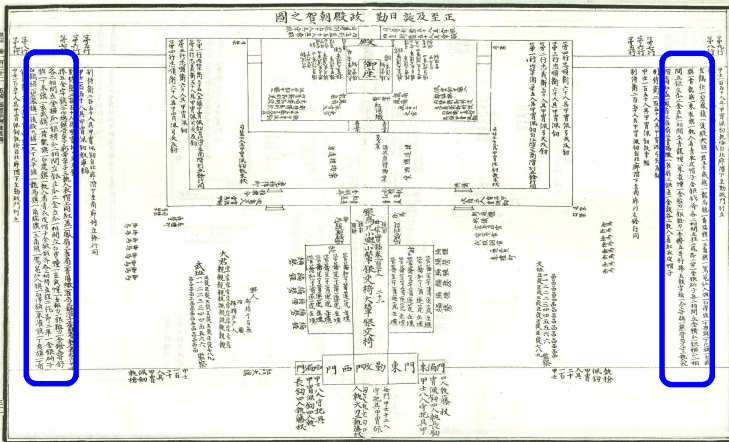
【표 6】은 해당 의식과 의장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의 경우 각각의 배반도는 서로 다른 의장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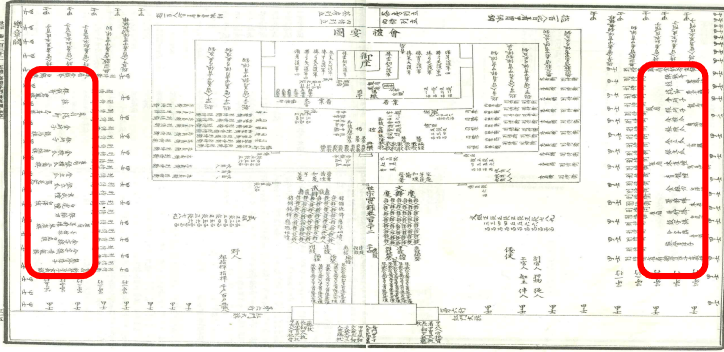
면에 「실록오례」의 경우는 이점이 분명하지 않다. 중국 관련 의식에서는 황의장이 두 번 제시되어 있고, 조선 국왕의 의식에서도 회례연도는 의장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 등급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무엇보다 會禮宴圖는 해당 의식의 의주가 가례의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록오례」의 배반도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면에서 『국조오례의』와 비교할 때, 치명적인 결함을 담고 있다.

의장의 표시 방식에서도 「실록오례」는 일관된 형식을 취하지 못하는 결함이 나타난다. 다음 【그림 1】, 【그림 3】은 「실록오례」의 배반도와 『국조오례의』 배반도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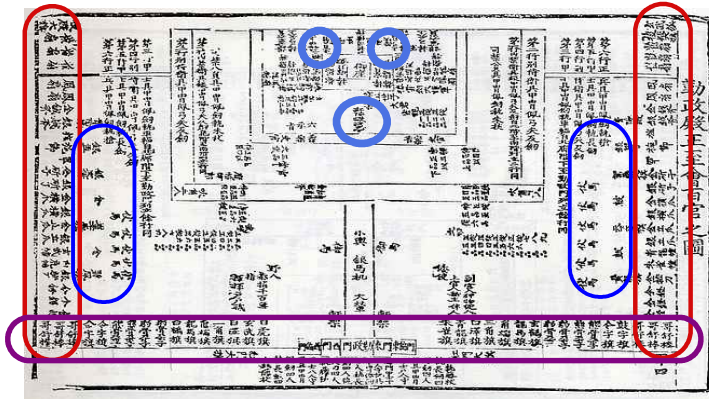
【그림 1】 勤政殿正至誕生日朝賀圖(실록오례)



【그림 2】 會禮宴圖(실록오례)



【그림 3】 『국조오례의』 배반도(勤政殿正至會百官之圖)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록오례」 배반도의 의장 표시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림 1】은 각각의 의장을 연결해서 기재하고 있는 반면, 【그림 2】는 각각의 의장이 위치하는 지점에 의장이 향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의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3】은 『국조오례의』의 의장 표시 방식이다. 【그림 2】의 방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림 2】 회례연도의 방식이 의장의 위치를 참조하는 배반도 작성의 본

래 취지에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다. 어떤 「실록오례」 내의 배반도가 다른 방식의 의장 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해둔다. 이러한 불일치는 「실록오례」 서례의 일관성에 약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會禮宴은 가례의 의식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의식이다. 嘉禮의 서례와 의식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 지적할 사항은 회례연도의 의장 등급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조오례의』 단계에서의 의장은 대·중·소장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鹵簿의 대가·범가·소가에 대응하는 것인데, 「실록오례」 단계에서는 노부의 대가·범가·소가는 확립되어 있었지만, 의장의 경우는 소장의장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례연도의 의장은 대가·범가보다는 의장물의 수효가 적은 것으로 보아 낮은 등급일 터인데,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찾아지지 않는다.

「실록오례」의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의장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서술 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의장 배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림 1】의 서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은 동쪽과 서쪽에 배치되고, 세 줄로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²⁾ 이런 의장 배치 방식은 『국조오례의』 의장 배치와는 다른 것이다.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국조오례의』 단계에서는 동·서와 남쪽으로 의장이 배치되어 있다. 의장을 동·서로 배치하는 것은 세종 15년 결정 사항이었다.⁵³⁾ 당시 문제된 상황이 班次의 뒤쪽, 즉 전정의 남쪽 지점에 의장이 배치된 것이 잘못이

52) 「실록오례」 가례서례 ‘正至及誕日勤政殿朝賀之圖’의 의장은 제7행에 기재되어 있는데, 동반의 경우는 오른쪽부터, 서반의 경우는 왼쪽부터 읽도록 기술되어 있다. 의장이 배치되는 줄의 마지막에는 의장을 잡는 군인의 服色을 기재하여 줄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세 줄로 배치된 동·서반의 의장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2】 회례연도의 방식이다.

53) 『세종실록』 62, 세종 15년 10월 8일(정사)

라는 것이었고, 이를 수정하여 동·서에만 의장을 배치되도록 하였다. 「실록오례」의 의장 배치는 세종 때의 개정 작업을 반영한 것이었고, 『국조오례의』 단계에서는 종전의 방식으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변효문 등의 五禮儀註 상정 작업은 원칙적으로 세종 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의장은 국왕을 상징하는 장치이다. 그만큼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록오례」의 배반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장을 기재하고 있고, 배반도의 선정은 서로 상이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서례와 의식 사이에도 서례의 회례연도가 의식에서 의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의장의 등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종 때 변효문 등이 정리한 五禮儀註는 『세종실록』에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론은 이 작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장에서 길례와 가례의 일부 영역을 검토하였다. 변효문 등이 정리한 길례의 정비 수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의 작업이 반영되지 않은 「실록오례」의 길례 사항은 세종 때의 개정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세종 때의 개정 작업은 의식의 패턴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태종 때 작업의 오류나 불일치를 조정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항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례 영역에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서례와 의주 모두에서 일관성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서례와 의주 상호 간에도 충돌되는 사항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리 작업상의 착오도 있으나, 정리 작업 자체가 미진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종합할 경우 변효문 등의 五禮儀註는 여전히 개선과 조정이 요구되는 미완의 작업이었다는 당시의 판단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정리함으로써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세종 31년 『고려사』를 기전체 사서로 최종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작업은 매우 서둘러서 진행되었다. 기전체로 편집 방침을 바꾸는 데는 당시 왕세자였던 문종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이어서 『고려사』 편찬을 진행하였던 다수 관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실록』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종실록』은 이전까지의 실록과는 다르게 다양한 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편찬되었다. 禮志의 경우는 문종과 단종 때 두 번의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과는 예지를 수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종 때의 논의는 세종 때 작성되었던 의주 전체를 처리하는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정인지·허후는 의주를 별도의 지로 작성하자는 의견이었으나, 국왕은 날짜별로 해당 기사를 수록하도록 하였다. 단종 때의 논의는 세종의 지시로 개정된 五禮儀註를 『세종실록』에 수록하는 문제였다. 당시의 논의는 이 자료가 미완의 성격이라는 이유로 수록이 거부되었다. 정인지·신숙주 등 일부 관원은 『세종실록』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들 찬성 세력은 계유정난을 통해 집권하였고, 현존하는 『세종실록』에는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五禮가 수록되어 있다. 이런 정황은 계유정난 주도 세력에 의해 「실록오례」가 수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록오례」는 태종 때 작업된 「제사의식」과 「제사서례」가 길례 부분에 포함된 반면, 나머지 四禮는 변효문의 작업을 수록한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편집을 볼 때, 허후 등의 주장을 반영하여 계유정난 이전에 「실록오례」의 편집이 이루어져 『세종실록』에 수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종 때의 날짜별로 의주를 기재해야 한다는 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세종실록』에 수록된 길례와 가례, 흉례 등의 의주는 현재 수록된 상태로는 별도의 일관된 의례서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길례에는 대사에 해당하는 사직의 親祭가 누락되어 있고, 종묘 친제 규정도 수록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사와 소사에 해당하는 의식의 많은 경우가 누락되어 있었다. 흉례의 경우는 가장 많은 수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으나 국왕과 왕비, 왕자, 공주 등의 상·장례를 고르게 수록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가례 영역의 경우도 조정의식과 통과의례, 국제관계 의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수록된 의주의 이런 구성 분포로 볼 때, 이들이 별도의 지가 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와는 달리 독립된 의례서가 아닌 역사 서술의 일부로 편집되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실록오례」는 세종 때의 길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서 기본적으로 체제 구성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왕의 핵심적인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의장 영역에서조차 서례와 의식 기술상의 충돌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일관된 정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검토하였다. 이런 사항을 종합할 때, 현재의 「실록오례」는 미완의 책으로서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양성지가 세조 초에 세종 때의 찬정 의주를 별도의 책으로 엮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실록오례」의 불완전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효문 등의 작업은 길례를 포함한 것인데, 「실록오례」는 이를 누락시켜 편집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행례에서 참조할 수 없는 자료가 되었다. 그렇다고 변효문 등의 작업 결과는 별도로 간행된 것도 아니므로 서둘러 독립된 책으로 간행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었다. 세조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위지에게 成冊 작업을 지시하였다. 하위지 등은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기 때문에 이 성책 작업의 전말은 알 수 없

다. 成侃의 五禮序는 어쩌면 당시의 작업이 상당 정도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실록오례」 단계에서 오례의 순서는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로 정리되었다. 성간의 오례서는 이와는 다른 의례 순서를 설정하고 있고, 『고려사』 「예지」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변효문·정척 등이 상정한 五禮는 의주와 서례로 구성된 작업이었다. 이 결과물은 아직은 미완의 상태였다. 의주와 서례 자체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의주와 서례 사이의 일관된 체제를 갖추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그런데 「실록오례」는 이미 상당 부분 수정된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로 길례 항목을 대체하면서 나머지 四禮를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따라서 「실록오례」의 편집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의주와 서례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한 의례서의 편찬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실록오례」는 향후의 실천을 고려하여 작성된 의례서였지만, 『국조오례의』 단계에 가서야 애초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정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행례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실록오례」가 세종 때의 다양한 의식 개정 작업을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일관성과 체계성에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조선 초기 국가예의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점도 사실이다. 의식의 패턴을 정비하면서 길례와 가례, 흉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쳤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토를 기약한다.

【부표 1】 『세종실록』 수록 儀註 정리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1	親詣上王殿進箋儀	즉위 8월 11일(무자)	1418	가례		
2	迎使臣儀	즉위 9월 2일(기유)	1418	가례	영척서의	
3	拜謝恩表儀	즉위 9월 6일(계축)	1418	가례	배표의	
4	謁廟後朝賀儀	즉위 9월 27일(갑술)	1418	가례		
5	上王封崇儀	즉위 11월 7일(계축)	1418	가례		상왕
6	大妃封崇儀	즉위 11월 7일(계축)	1418	가례		상왕
7	冊封中宮儀	즉위 11월 9일(을묘)	1418	가례	책비의	
8	宮庭受冊儀	즉위 11월 9일(을묘)	1418	가례	책비의	
9	中宮謝表儀	즉위 11월 9일(을묘)	1418	가례	책비의	
10	百官朝賀儀	즉위 11월 9일(을묘)	1418	가례	책비의	
11	中宮受賀儀	즉위 11월 9일(을묘)	1418	가례	책비의	
12	上王殿上壽儀	즉위 11월 14일(경신)	1418	가례		상왕
13	冬至朝賀儀	즉위 11월 15일(신유)	1418	가례		상왕
14	視學酌獻文宣王儀	즉위 11월 21일(정묘)	1418	길례	시학작헌 문선왕	
15	朔望朝壽康宮儀	즉위 11월 28일(갑술)	1418	가례		상왕
16	拜陵儀	즉위 12월 17일(임진)	1418	길례		
17	殿下朝壽康宮儀及上壽儀	즉위 12월 20일(을미)	1418	가례		상왕
18	上壽儀	즉위 12월 20일(을미)	1418	가례		
19	迎詰命儀	1년 1월 6일(신해)	1419	가례		1401년 기준
20	軍士朝會儀	1년 1월 26일(신미)	1419	군례		
21	拜陵攝行儀	1년 7월 27일(庚午)	1419	길례		
22	太祖聖眞奉安儀註	1년 8월 8일(庚辰)	1419	길례		
23	賜宴儀	1년 8월 19일(辛卯)	1419	빈례		
24	成服儀	1년 9월 27일(己巳)	1419	흉례	성복	
25	殯殿朔望奠親行儀	1년 9월 29일(辛未)	1419	흉례	삭망전	
26	攝喪主攝行(殯殿朔望奠)儀	1년 9월 29일(辛未)	1419	흉례	삭망전	
27	朝奠儀	1년 9월 29일(辛未)	1419	흉례	조석곡전급상식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28	食時上食儀	1年 9月 29日(辛未)	1419	흉례	조석곡전급상식	
29	小祥儀	1年 10月 8日(己卯)	1419	흉례	상제	
30	攝喪主攝行禫祭儀	1年 10月 22日(癸巳)	1419	흉례	담제	
31	開土、斬土祭儀	1年 12月 7日(丁丑)	1419	흉례		
32	上謚冊謚寶儀	1年 12月 12日(壬午)	1419	흉례	상시책보	
33	上王拜謝恩表儀	1年 2月 14日(甲申)	1419	흉례		상왕
34	大行上王發引排班及儀注	1年 12月 19日(己丑)	1419	흉례		상왕
35	大行上王返虞主時排班及儀注	1年 12月 19日(己丑)	1419	흉례		상왕
36	(大行上王返虞主)攝行儀	1年 12月 19日(己丑)	1419	흉례		상왕
37	大行上王朝奠儀	1年 12月 21日(辛卯)	1419	흉례		상왕
38	大行上王臨壙奠儀	1年 12月 22日(壬辰)	1419	흉례		상왕
39	(大行上王臨壙奠)攝行儀	1年 12月 22日(壬辰)	1419	흉례		상왕
40	계빈의	1年 12月 22日(壬辰)	1419	흉례		상왕
41	섭행계빈의	1年 12月 22日(壬辰)	1419	흉례		상왕
42	上王行大行上王遣奠儀	1年 12月 24日(甲午)	1419	흉례		상왕
43	主上殿行(遣奠)儀	1年 12月 24日(甲午)	1419	흉례	건진의의	
44	謝后土儀	1年 12月 25日(乙未)	1419	흉례	치장	
45	掩壙奠儀	1年 12月 25日(乙未)	1419	흉례	치장	
46	立主奠儀	1年 12月 25日(乙未)	1419	흉례	입주진	
47	奉迎虞主儀	2年 1月 4日(癸卯)	1420	흉례	반우	
48	卒哭祭儀	2年 1月 13日(壬子)	1420	흉례	졸곡제	
49	卒哭祭攝行儀	2年 1月 13日(壬子)	1420	흉례		
50	恭靖大王四時大享儀	2年 1月 13日(壬子)	1420	길례		
51	定安王后移安儀	2年 閏1月 28日(丁酉)	1420	흉례	부묘	
52	(定安王后)合享儀	2年 閏1月 28日(丁酉)	1420	길례		
53	啓命殿親享儀	2年 閏1月 28日(丁酉)	1420	길례		상왕
54	順孝王魂殿賜祭儀	2年 4月 7日(乙巳)	1420	흉례	사제	상왕
55	喪制	2年 7月 10日(丙子)	1420	흉례	복제	원경후
56	成服儀	2年 7月 15日(辛巳)	1420	흉례	성복	원경후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57	朔望奠及有名日別祭儀	2年 7月 15日(辛巳)	1420	흉례	삭망전	원경후
58	(삭망전)宗室陪祭儀	2年 7月 15日(辛巳)	1420	흉례	삭망전	원경후
59	祀后土儀	2年 8月 25日(辛酉)	1420	흉례		원경후
60	謝后土儀	2年 8月 25日(辛酉)	1420	흉례		원경후
61	上諡冊・謚寶儀	2年 8月 29日(乙丑)	1420	흉례	상시책보	원경후
62	立主奠儀	2年 8月 29日(乙丑)	1420	흉례	입주전	원경후
63	遣奠儀	2年 8月 29日(乙丑)	1420	흉례	건진	원경후
64	祖奠儀	2年 8月 29日(乙丑)	1420	흉례	조진	원경후
65	大妃上諡告宗廟儀	2年 9月 10日(乙亥)	1420	흉례	청시종묘	원경후
66	百官設奠于殯殿儀	2年 9月 12日(丁丑)	1420	흉례	의정부술백관진향	원경후
67	發引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발인	원경후
68	路祭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노제	원경후
69	遷奠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천진	원경후
70	安陵奠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안릉전	원경후
71	返魂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반우의	원경후
72	虞祭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우제	원경후
73	卒哭儀	2年 9月 13日(戊寅)	1420	흉례	졸곡제	원경후
74	恭靖大王練祭親行儀	2년 9월 23일(무자)	1420	흉례	연제	
75	恭靖大王練祭攝行儀	2년 9월 23일(무자)	1420	흉례	연제	
76	拜獻陵儀	2년 9월 30일(을미)	1420	흉례	산릉친행별제	원경후
77	拜獻陵攝行儀	2년 9월 30일(을미)	1420	흉례	산릉사시급답정지속절제	원경후
78	廣孝殿朔望親享儀	2년 9월 30일(을미)	1420	흉례		원경후
79	廣孝殿朔望攝行儀	2년 9월 30일(을미)	1420	흉례		원경후
80	廣孝殿四時大享儀	2년 10월 7일(임인)	1420	흉례		원경후
81	大臣致祭儀	3년 4월 12일(갑진)	1421	흉례		
82	大臣策贈儀	3년 4월 12일(갑진)	1421	흉례		
83	元敬王太后練祭儀	3년 5월 8일(기사)	1421	흉례	연제	
84	恭靖大王祥祭攝行儀	3년 6월 20일(신해)	1421	흉례	상제	
85	恭靖大王攝行禫祭儀	3년 6월 20일(신해)	1421	흉례	담제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86	(恭靖大王)親享祥祭儀	3년 6월 20일(신해)	1421	흉례	상제	
87	(恭靖大王)親享禫祭儀	3년 6월 20일(신해)	1421	흉례	담제	
88	元敬王太后祥祭儀	3년 6월 20일(신해)	1421	흉례	상제	
89	元敬王太后禫祭儀	3년 6월 20일(신해)	1421	흉례	담제	
90	廣孝殿朔望祭儀	3년 9월 14일(갑술)	1421	길례		
91	廣孝殿四時臘親享儀	3년 10월 5일(갑오)	1421	길례		
92	廣孝殿四時臘攝行儀	3년 10월 5일(갑오)	1421	길례		
93	冊王世子儀	3년 10월 26일(을묘)	1421	가례	책왕세자의	
94	(왕세자)朝王妃儀	3년 10월 26일(을묘)	1421	가례	책왕세자의	
95	(왕세자)朝太上殿儀	3년 10월 26일(을묘)	1421	가례	책왕세자의	상왕
96	(왕세자)百官朝賀儀	3년 10월 26일(을묘)	1421	가례	책왕세자의	
97	王世子謁宗廟儀	3년 10월 26일(을묘)	1421	가례	책왕세자의	
98	啓聖殿四時及臘享有名日別祭朔望祭儀	3년 11월 7일(병인)	1421	길례		
99	永寧殿移安儀	3년 12월 10일(기해)	1421	길례		
100	王世子入學儀及束脩儀	3년 12월 23일(임자)	1421	가례		
101	成服儀	4년 5월 13일(기사)	1422	흉례	성복	태종
102	朔望奠儀	4년 5월 13일(기사)	1422	흉례	삭망전	태종
103	啓殯奠儀	4년 8월 14일(무술)	1422	흉례	계빈	태종
104	祖奠儀	4년 8월 14일(무술)	1422	흉례	조진	태종
105	遺奠儀	4년 8월 14일(무술)	1422	흉례	견진	태종
106	祠后土儀	4년 8월 14일(무술)	1422	흉례	치장?	태종
107	立主奠儀	4년 8월 16일(경자)	1422	흉례	입주전	태종
108	發引班次, 遷奠儀	4년 8월 22일(병오)	1422	흉례	발인반차, 발인	태종
109	上諡冊寶儀	4년 8월 28일(임자)	1422	흉례	상시책보	태종
110	返虞班次	4년 8월 29일(계축)	1422	흉례	반우반차, 반우	태종
111	虞祭儀	4년 8월 30일(갑인)	1422	흉례	우제	태종
112	安陵奠儀	4년 8월 30일(갑인)	1422	흉례	안릉전	태종
113	殯殿朔祭儀	4년 9월 1일(을묘)	1422	흉례	삭망전	태종
114	謝后土儀	4년 9월 3일(경사)	1422	흉례	치장	태종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115	拜獻陵儀	4년 9월 14일(무진)	1422	흉례	산릉친행별제	태종
116	廣孝殿朔望儀	4년 9월 14日(戊辰)	1422	흉례		태종
117	廣孝殿朔望攝行儀	4년 9월 14日(戊辰)	1422	흉례		태종
118	卒哭後廣孝殿朔望及有名日別祭親享儀	4년 9월 29日(癸未)	1422	흉례		태종
119	四時及臘親享廣孝殿儀攝事儀	4년 10월 2日(丙戌)	1422	흉례		태종
120	拜獻陵攝事儀	4년 10월 6日(庚寅)	1422	흉례	산릉사시급랍정 지속절제, 산릉친 행별제	태종
121	朔望享文昭殿攝事儀	4년 10월 12日(丙申)	1422	흉례		
122	迎謚誥祭文博物儀註	5년 4월 3日(癸丑)	1423	흉례	영사시제급조부	
123	賜祭儀註	5년 4월 3日(癸丑)	1423	흉례	사제	
124	賜賻儀注	5년 4월 3日(癸丑)	1423	흉례	사부	
125	賜謚儀注	5년 4월 3日(癸丑)	1423	흉례	사시	
126	焚黃祭儀注	5년 4월 12일(임술)	1423	흉례	분황	
127	太宗耐廟儀註	6년 6월 14日(丁巳)	1424	흉례	부묘	
128	韓氏母賜祭欽差迎接儀註	6년 6월 16일(기미)	1424	빈례		
129	太宗大王元敬王后位版奉安廣孝殿儀註	6년 6월 18日(辛酉)	1424	흉례		
130	元敬王后加上尊號儀注	6년 6월 29日(壬申)	1424	흉례		
131	四時及臘, 有名日親享儀	6년 6월 29日(壬申)	1424	흉례	사시급납친향 종묘	
132	禫祭儀註	6년 7월 2日(乙亥)	1424	흉례	담제	
133	大行皇帝學哀議註	6년 9월 1日(癸酉)	1424	흉례		
134	禡祭儀注	6년 9월 22日(甲午)	1424	길례		
135	大閱儀注	6년 9월 24日(丙申)	1424	군례	대열	
136	殿下爲外祖父母學哀儀注	6년 10월 7日(戊申)	1424	흉례		
137	臨諸君夫人公主翁主喪	6년 10월 7日(戊申)	1424	흉례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138	臨諸君夫人公主翁主喪 遣使弔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39	遣使祭贈諸君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0	遣使致奠諸君及夫人公 主喪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1	東宮舉哀 爲外祖父母舉哀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2	臨師傅保喪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3	遣使致奠外祖父母喪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4	致奠嬪父母喪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5	致奠師傅保喪	6年 10月 7日(戊申)	1424	흉례		
146	迎勅儀注	6年 10月 11日(壬子)	1424	가례	영척서의	
147	攝行春享于永寧殿儀注	7年 1月 14日(乙酉)	1425	길례		
148	迎勅儀	7年 1月 23日(甲午)	1425	가례	영척서의	왕세자 추가
149	迎賜藥材勅書儀注	7年 11月 2日(丁酉)	1425	가례	영척서의	
150	祀老人星	8年 5月 19日(壬子)	1426	길례	祀靈星儀	문헌통고 참조
151	(왕세자)納彩儀	9年 2月 8日(丙寅)	1427	가례	王世子納嬪儀	
152	(왕세자)納徵儀	9年 2月 19日(丁丑)	1427	가례	王世子納嬪儀	
153	世子嬪冊封儀	9年 4月 9日(丁卯)	1427	가례	冊王世子嬪儀	
154	嬪受冊	9年 4月 9日(丁卯)	1427	가례	冊王世子嬪儀	
155	王世子納嬪儀	9年 4月 26日(甲申)	1427	가례	王世子納嬪儀/ 臨軒醮戒	
156	親迎儀	9年 4月 26日(甲申)	1427	가례	王世子納嬪儀	
157	同牢儀	9年 4月 26日(甲申)	1427	가례	王世子納嬪儀	
158	嬪朝見儀	9年 4月 26日(甲申)	1427	가례	王世子納嬪儀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159	迎詔儀	10年 3月 19日(辛丑)	1428	가례	迎詔書儀	
160	受本朝使臣齋來勅書儀	10年 3月 19日(辛丑)	1428	가례		
161	聖澤呈才儀	10年 5月 26日(丁丑)	1428	가례		
162	皇親賜祭使臣迎接儀	10年 12月 24日(辛丑)	1428	흉례		
163	황제賜祭儀	11年 1月 3日(庚戌)	1429	흉례		
164	文科殿試儀	11年 1月 24日(辛未)	1429	가례	文科殿試儀	
165	무과전시의	11年 1月 24日(辛未)	1429	가례		
166	문무과방방의	11年 1月 24日(辛未)	1429	가례		
167	新及第榮親儀	11年 4月 15日(庚寅)	1429	가례		
168	常參儀	11年 4月 22日(丁酉)	1429	가례	常參儀	
169	勅書賞賜迎接儀	11年 4月 26日(辛丑)	1429	가례		
170	文廟酌獻儀	11年 5月 24日(己巳)	1429	길례		
171	親試視學儀	11年 5月 25日(庚午)	1429	길례		
172	大臣出使時賜餞禮曹儀	11年 9月 29日(壬申)	1429	가례		
173	王世子冊嬪禮	11年 10月 18日(辛卯)	1429	가례		
174	王世子醮戒禮	11年 10月 18日(辛卯)	1429	가례		
175	宗親入學儀	12년 1月 6日(정미)	1430	가례		
176	王子謁聖儀	12년 3月 6日(병오)	1430	가례		
177	受本國使臣齋來勅書朝服儀	12년 4月 17日(병술)	1430	가례		
178	正朝受王世子朝賀儀	12년 閏12月 23日(기미)	1430	가례	正至王世子朝賀儀	
179	正朝受群臣朝賀儀	12년 閏12月 23日(기미)	1430	가례	正至王世子朝賀儀	
180	中宮正至受王世子朝賀儀	12년 閏12月 28日(갑자)	1430	가례	中宮正至王世子朝賀儀	
181	王世子朔日朝儀	13年 3月 14日(戊寅)	1431	가례	朔望王世子朝賀儀	
182	誕生日 受王世子朝賀儀	13年 3月 16日(庚辰)	1431	가례	正至王世子朝賀儀	
183	誕生日 受群臣朝賀儀	13年 3月 16日(庚辰)	1431	가례	正至王世子朝賀儀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184	王世子正至受宮官朝賀儀	13年 6月 4日(丙申)	1431	가례		
185	王世子正至受群官賀儀	13年 6月 4日(丙申)	1431	가례		
186	與師傅賓客相見儀	13年 6月 4日(丙申)	1431	가례	王世子與師傅賓客相見儀	
187	書筵進講儀	13年 6月 4日(丙申)	1431	가례	書筵進講儀	
188	會禮儀	13年 10月 3日(甲午)	1431	가례	正至會儀	
189	養老宴儀	14年 1月 7日(丁卯)	1432	가례	養老儀	
190	冊封王妃儀	14年 5月 11日(戊辰)	1432	가례	冊妃儀	
191	王世子嬪冊封儀	14年 5月 13日(庚午)	1432	가례	冊王世子嬪儀	
192	社稷攝事儀	14年 7月 29日(乙酉)	1432	길례	祭社稷攝事	
193	王妃養老宴儀	14年 8月 21日(丁未)	1432	가례	中宮養老儀	
194	文昭殿移安後受朝賀儀	15年 5月 1日(癸丑)	1433	길례		
195	文昭殿移安儀	15年 5月 2日(甲寅)	1433	길례		
196	文昭殿四時及臘俗節攝行儀	15年 5月 4日(丙辰)	1433	길례		
197	文昭殿忌晨祭儀	15年 5月 8日(庚申)	1433	길례		
198	野人征伐告宗廟後受朝賀儀	15年 5月 13日(乙丑)	1433	가례		
199	文昭殿朔望儀	15年 5月 13日(乙丑)	1433	길례		
200	救日食儀	15年 7月 20日(辛未)	1433	군례	救日食	
201	行宮賀聖節儀注	16年 2月 8日(丙辰)	1434	가례		
202	拜謁先師儀	16年 3月 5日(壬午)	1434	길례		문선왕
203	視學儀	16年 3月 5日(壬午)	1434	가례	視學酌獻文宣王儀	
204	文武科放榜儀	16年 3月 7日(甲申)	1434	가례	文武科放榜儀	
205	祈告社稷儀	16年 7月 27日(壬寅)	1434	길례	祈告社稷	
206	太行皇帝成服儀	17年 1月 29日(辛丑)	1435	흉례		
207	(改修)生員放榜儀	17年 2月 25日(丁卯)	1435	가례	生員放榜儀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208	王子婚禮儀	17年 2月 29日(辛未)	1435	가례	王子昏禮儀	
209	一品至庶人婚禮儀	17年 2月 29日(辛未)	1435	가례		
210	文廟奠謁儀	17年 12月 19日(丙辰)	1435	길례		
211	迎曆日儀	18年 1月 3日(己巳)	1436	군례		
212	王世子納嬪儀	18年 6月 15日(庚戌)	1436	가례	王世子納嬪儀	
213	中宮胎移葬時 儀註	20年3月17日(辛丑)	1438	?		
214	風雲雷雨祭	21年1月16日(乙未)	1439	길례	風雲雷雨壇祈雨	
215	祈雨儀	21年1月16日(乙未)	1439	길례	風雲雷雨壇祈雨	
216	講武後豐呈儀	21年3月2日(庚戌)	1439	군례	講武?	
217	霽祭儀	22年6月13日(癸未)	1440	길례		
218	厲祭儀	22年 6月 29日(己亥)	1440	길례		
219	迎勅儀	23年 1月 1日 (己亥)	1441	가례	迎勅書儀	
220	賜諡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賜諡	顯德嬪
221	賜諡後奠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顯德嬪
222	啓殯奠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啓殯	顯德嬪
223	祖奠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祖奠	顯德嬪
224	遣奠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遣奠	顯德嬪
225	發引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發引	顯德嬪
226	路祭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路祭	顯德嬪
227	橋梁祭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없음	顯德嬪
228	遷奠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遷奠	顯德嬪
229	安墓奠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安陵奠?	顯德嬪
230	返虞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返虞	顯德嬪
231	虞祭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虞祭	顯德嬪
232	卒哭祭儀	23年9月14日(丁未)	1441	흉례	卒哭祭	顯德嬪
233	四仲祭儀	23年10月26日(己丑)	1441	흉		顯德嬪
234	奉迎賜藥儀	23年 12月 5日(丁酉)	1441	가례		
235	頒降敎書儀	24年2月11日(壬寅)	1442	가례	敎書頒降儀	
236	練祭儀	24年 5月 22日(辛巳)	1442	흉례	練祭	顯德嬪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237	祥祭儀	24年 7月 12日(庚午)	1442	흉례	祥祭	顯德嬪
238	御容奉迎儀	24年 7月 18日(丙子)	1442	?		
239	禫祭儀	24年 9月 1日(戊午)	1442	가례	禫祭	顯德嬪
240	宗廟四時及臘享王世子代行儀	24年 11月 24日(庚辰)	1442	길례	四時及臘親享宗廟	
241	世子受朝參儀	25年 6月 3日(丙戌)	1443	가례	五日朝參儀?	
242	王世子代行文昭殿秋夕祭儀	25年 8月 13日(乙未)	1443	길례		
243	太祖辟容奉安儀	25年 9月 11日(壬戌)	1443	?		
244	王世子拜陵儀	25年 9月 11日(壬戌)	1443	길례	朔望王世子朝賀儀	
245	正至群官賀王世子儀	25年 11月 20日(辛未)	1443	가례	正至王世子朝賀儀?	
246	朝夕哀奠及食時上食儀	28年 3月 24日(辛卯)	1446	흉례	朝夕哭奠及上食	소헌왕후
247	襲	28年 3月 24日(辛卯)	1446	흉례		소헌왕후
248	小斂	28年 3月 25日(壬辰)	1446	흉례		소헌왕후
249	大斂	28년 3월 27일(갑오)	1446	흉례		소헌왕후
250	喪制	28년 3월 27일(갑오)	1446	흉례		소헌왕후
251	世子率百官成服	28年 3月 28日(乙未)	1446	흉례		소헌왕후
252	朔望及俗節別奠儀	28年 4月 1日(戊戌)	1446	흉례		소헌왕후
253	領議政率百官進香于殯殿	28年 4月 9日(丙午)	1446	흉례		소헌왕후
254	啓殯葬儀	28年 7月 16日(壬午)	1446	흉례	啓殯	소헌왕후
255	祖奠儀	28年 7月 16日(壬午)	1446	흉례	祖奠	소헌왕후
256	遣奠儀	28年 7月 16日(壬午)	1446	흉례	遣奠	소헌왕후
257	發引儀	28年 7月 16日(壬午)	1446	흉례	發引	소헌왕후
258	路祭儀	28年 7月 16日(壬午)	1446	흉례	路祭	소헌왕후
259	遷奠儀	28年 7月 16日(壬午)	1446	흉례	遷奠	소헌왕후
260	謝后土儀	28年 7月 19日(乙酉)	1446	흉례	치장?	소헌왕후
261	立主奠儀	28年 7月 19日(乙酉)	1446	흉례		소헌왕후
262	返虞儀	28年 7月 19日(乙酉)	1446	흉례		소헌왕후
263	安陵奠儀	28年 7月 19日(乙酉)	1446	흉례		소헌왕후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264	英陵朝夕上食儀	28年 7月 19日(乙酉)	1446	흉례		소헌왕후
265	輝德殿朝夕上食儀	28年 7月 19日(乙酉)	1446	흉례	魂殿朝夕上食	소헌왕후
266	英陵基年內別祭王世子行禮儀	28年 7月 20日(丙戌)	1446	흉례		소헌왕후
267	期年內四時大享及朔望有名日別祭大君諸君行禮儀	28年 7月 20日(丙戌)	1446	흉례		소헌왕후
268	虞卒哭祭儀	28年 8月 3日(戊戌)	1446	흉례	虞祭, 卒哭祭	소헌왕후
269	輝德殿期年內朔望祭及有名日別祭王世子行禮儀	28年 10月 1日(乙未)	1446	흉례		소헌왕후
270	輝德殿期年內朔望祭及有名日別祭대군제군행례의	28年 10月 1日(乙未)	1446	흉례		소헌왕후
271	輝德殿期年內四時大享及臘王世子行禮儀	28年 10月 3日(丁酉)	1446	흉례		소헌왕후
272	輝德殿期年內四時大享及臘대군제군行禮儀	28年 10月 3日(丁酉)	1446	흉례		소헌왕후
273	王世子期年內拜英陵儀	28年 10月 22日(丙辰)	1446	흉례		소헌왕후
274	輝德殿練祭儀	28年 12月3日(丙申)	1446	흉례	練祭	소헌왕후
275	英陵練祭儀	28年 12月3日(丙申)	1446	흉례	練祭	소헌왕후
276	輝德殿祥祭儀	28年 12月 29日(壬戌)	1446	흉례	祥祭	소헌왕후
277	英陵祥祭儀	28年 12月 29日(壬戌)	1446	흉례	祥祭	소헌왕후
278	輝德殿禫祭儀	29年 2月 16日(戊申)	1447	흉례	禫祭儀	소헌왕후
279	英陵禫祭儀	29年 2月 16日(戊申)	1447	흉례	禫祭儀	소헌왕후
282	輝德殿期年後四時大享及臘享王世子行禮儀	29年 3月 22日(甲申)	1447	흉례		소헌왕후
281	遣官行禮儀	29年 3月 22日(甲申)	1447	흉례		소헌왕후
282	輝德殿期年後朔望及有名日別祭王世子行禮儀	29年 3月 22日(甲申)	1447	흉례		소헌왕후
283	遣官行禮儀	29年 3月 22日(甲申)	1447	흉례		소헌왕후
284	東宮視事儀	29年 9月 19日(戊申)	1447	가례		
285	諸山陵及眞殿大小祭品	29年 11月 2日(辛卯)	1447	길례		
286	輝德殿忌晨祭儀	30年 3月 18日(癸卯)	1448	길례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의주	일자	연도	분류	실록오례	비고
287	遣官行禮儀	30年 3月 18日(癸卯)	1448	길례		
288	新制東宮大小駕儀仗	30年 3月 24日(己酉)	1448	가례		
289	日本國使肅拜儀	30年 6月 19日(癸酉)	1448	가례		
290	日本國使東宮肅拜儀	30年 6月 19日(癸酉)	1448	가례		
291	日本國王遣使進香輝德殿儀	30年 6月 25日(己卯)	1448	흉례		
292	東宮養老宴儀	30年 8月 23日(丙子)	1448	가례		
293	王世孫入學儀	30年 8月 28日(辛巳)	1448	가례		
294	王世子生辰賀儀	30年 10月 12日(乙丑)	1448	가례		
295	世子代行祭飮福儀	30年 12月 18日(庚午)	1448	길례		
296	世子受朝參儀	31年 1月 26日(丁未)	1449	가례		
297	王世子代行迎勅儀	31年 9月 7日(甲申)	1449	가례		
298	代迎詔勅及賜物儀	32年 1月 28日(甲辰)	1450	가례		
299	王子代行宴朝廷使儀	32年 閏1月 2日(丁未)	1450	빈례		
300	宗親宴朝廷使儀	32年 閏1月 2日(丁未)	1450	빈례		

참고문헌

1. 사료

- 『朝鮮王朝實錄』
『高麗史』
『大明集禮』
『皇命制書』
『大唐開元禮』
『通典』
『文獻通考』
『國朝五禮儀』

2. 논저

- 김문식, 2008,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김문식, 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김창현,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김철웅, 2003, 「조선초기 祀典의 체계화 과정」 『문화사학』
김태영, 1973,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58
김해영, 2010,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김해영, 2003, 『조선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이욱, 2002,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임민혁, 2010,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

지두환, 1985, 「國朝五禮儀 編纂過程(I)-吉禮 宗廟 · 社稷祭儀를 중심으로」 『부산사학』 9

하양허씨문경공파종친회, 2003, 『敬庵許稠研究』,

한형주, 2004, 「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 『역사교육』 89

한형주, 2004,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성」 『민족문화연구』 41

한형주, 2006,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 『민족문화연구』 44

Abstract

A Review on the First Appendix “Five Rites” of Sejong-Chronicle in Joseon

Kang, Jae Hoon

Sejong-Chronicle has a lot of appendices unlike other Chronicles of Joseon. I point out as a reason for the inclusion of various appendices that many government officials, who had compiled the History of Goryeo in a biological style, were involved in the compilation of the Chronicle.

We have records of the decision for the compilation of *Sejong-Chronicle* in a chronological style, but no records about the reasons for the inclusion of appendices. With regard to the first appendix “Five Rites”, we have records of two discussions that led to the decision not to include them as an appendix. With the examination of the discussions I look into the details of the compilation of the Five Rites in *Sejong-Chronicle*.

The first discussion concerns whether they should compile ceremonial notes made in Sejong’s reign as a separate appendix or include them as chronological records by date. The second discussion was about whether they should include the ceremonial notes on the Five Rites compiled by Byeon Hyo-mun and others with the order of the king in the year of Sejong 26. In both cases it was decided not to include them as an appendix.

Nonetheless, *Sejong-Chronicle* now has the Five Rites as the first appendix. The details of the revision remain unknown.

In this article I affirm that the Five Rites and the ceremonial notes contained in *Sejong-Chronicle* cannot constitute a separate appendix in their present form. The Five Rites, introduced by Byeon Hyo-mun, Jeong Cheok, and others, consisted of ceremonial notes(儀註) and ceremonial illustrations(序例). Their results were unfinished at the time. They still had to correct the errors in the notes and illustrations themselves. They also had to make them a consistent and systematic whole.

Even though the Five Rites of *Sejong-Chronicle*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various efforts to revise the ceremonies during Sejong's reign, and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it is also true that they were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process of improvements in the National ceremonies in the early Joseon.

Keywords : Sejong-Chronicle, Five Rites, early Joseon,
ceremonial notes, ceremonial illustrations